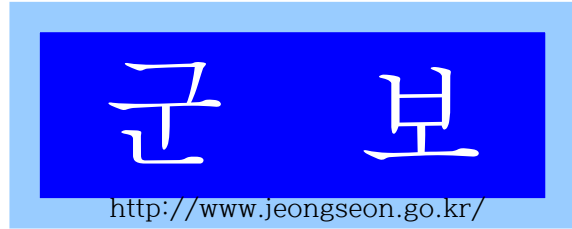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555호 2021. 3. 3. (수)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21-196호 정선군 착한 임대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1
- 정선군 공고 제2021-208호 정선군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 입법예고.....12
- 정선군 공고 제2021-212호 정선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20
- 정선군 공고 제2021-215호 정선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26
- 정선군 공고 제2021-224호 정선군 체육진흥 조례안 제정 입법예고.....31
- 정선군 공고 제2021-227호 2021년 노후택시 조기 대차비용 일부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38
- 정선군 공고 제2021-228호 「정선군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43
- 정선군 공고 제2021-247호 정선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52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관 (전화:560-2213, FAX:560-2592)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21-196호

정선군 착한 임대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착한 임대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8일

정 선 군 수

1. 제정이유

-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상권의 착한 임대인을 육성·지원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협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이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착한 임대인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착한 임대인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착한 임대인 지원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8조)
- 부정수급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제정 조례안 : 별첨

4. 입법예고 : 2021. 2. 18.~ 2021. 3. 10.

5. 의견제출

-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경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 소: (2316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정선군청) 경제과

☎ 전 화: 033-560-2355

☎ F A X : 033-560-2594

☎ E-mail : proomi@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착한 임대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착한 임대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상권의 착한 임대인을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도모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착한 임대인”이란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 또는 동결한 임대인을 말한다.
2. “착한 상가”란 착한 임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상가건물(건물 안에 있는 독립된 상가(商家)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이란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이익 증진을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한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착한 임대인의 육성과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정선군 관할에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 ① 군수는 상가건물 임대인에게 임차인과 상호 이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임대차 기간 중 임대료를 인하 또는 동결한 기간
2.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액 및 증감률
3. 계약 갱신요구권 및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가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한 사항

③ 군수는 착한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관계법령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 및 권리금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 발생으로 경제사정의 변동이 발생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인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착한 임대인 지정)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착한 임대인 지정신청을 한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대인을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전년도 또는 전분기 평균 임대료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6개월 이상 인하해 준 임대인
2.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한 임대인

제7조(착한 임대인 지정 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중에 제6조에 따른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착한 임대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서 : 별지 제2호서식
3. 상가임대차 계약서
4. 그 밖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한 서류

②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된 임대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차인에게 착한상가 현판을 제작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8조(착한 임대인 지원)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된 임대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착한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제4호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2. 전기요금 지원
3.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또는 지원

4. 착한 임대인 인증서

제9조(환수)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착한 임대인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한 경우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앞면]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신청서>

임대차 현황	임대인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연 락 처 :		
	임차인	성명 :	연 락 처 :		
	소재지				
	점포명		점포면적(m ²)		
임대료 인하 내역	인하 기간				
	현재 보증금 / 월세		월세 총 인하액		
지원 사업 선택	1. 지방세 감면				☐
	2. 전기 요금 지원				☐
	3. 수도 요금 감면(지원)				☐
	4. 착한 임대인 인증서 신청				☐

위와 같이 20 년도 정선군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임대·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서
3.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4. 위임장(대리 신청인 경우에 한정함)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 지 제 2 호]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서

임대인 과(와) 임차인 는(은) 코로나19 감염병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영업활동과 상권 활성화 도모를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1. 임대인은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차임이나 보증금을無理하게 인상하지 않는다.
2. 임차인은 지나친 호객행위, 바가지 상술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생협약서의 내용을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준수하기로 한다.

년 월 일

임대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임차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관련 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 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 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정선군 공고 제2021-208호

정선군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 입법예고

「정선군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3일

정 선 군 수

1. 제정이유

- 정부의 공모사업 및 지원사업이 주민 주도형 상향식 사업계획을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선군 농촌 활성화를 위한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4조)
 - 농촌 활성화를 위한 농촌협약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둔다.
- 지원센터의 설치(안 제10조)
 -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간지원조직으로 정선군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지원센터 위탁운영(안 제12조)
 - 지원센터는 전문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비용의 지원 및 정산(안 제13조)
 - 정선군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의 전문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 제정 조례안 : 별첨

4. 입법예고 : 2021. 2. 23.~ 2021. 3. 8.

5. 의견제출

-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 소 : (2316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정선군청) 기획관

☎ 전 화 : 033-560-2246

☎ F A X : 033-560-2592

☎ E-mail : atsel@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 치 법 규 명 : 정선군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건	비고
	찬 성	반 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농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중간지원조직”이란 지역주민과 군이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적극적인 주민 참여를 유도하여 상호 안정적으로 농촌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농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는 정선군 농촌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농촌지역개발 민간전문가, 농촌중심지 및 권역 추진위원장
2. 농촌관광 및 체험마을 대표
3. 정선군의회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4.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5.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촌 활성화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0조(지원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지속가능한 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간지원조직으로 정선군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주민자치, 농촌관광, 귀농귀촌, 평생학습 등의 분야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사업 수행 과정과 결과의 성평등한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농촌 지역개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농촌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사무장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사업계획의 효과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기관·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센터의 기능 및 사업) 지원센터는 농촌지역 활성화와 민간협력관계 구축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한다.

1. 중간지원조직의 사업계획 수립 및 효율적 운영
2. 유·무형의 지역자원 조사, 발굴, 분석, 연구 및 사업화
3.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연수, 컨설팅 및 지역역량 강화
4. 자체 공모사업 발굴 및 지원
5.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6. 농촌중심지 활성화, 마을 만들기 등 관련 민간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 7. 생활권 활성화, 관광·체험마을 만들기, 신(新)활력 플러스, 귀농귀촌 및 청년활동 장려
- 8.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지원센터 위탁운영 및 관리) ① 지원센터는 군수가 관리 운영한다. 다만, 그 전문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및 방법 등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비용의 지원 및 정산)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지원센터의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제1항의 지원을 받은 경우 수탁자는 군수에게 지원받은 비용에 대한 정산보고를 해야 한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원센터를 운영·관리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그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 변경 등으로 사무를 인수·인계할 경우에는 위탁 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비용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령 발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소비자 등의 책임)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농업인과 농촌주민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 인력, 농업 경영,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농산물의 유통 등을 포함한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식품산업과 농업 자재산업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등을 육성하여야 한다.

제46조(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연구·홍보 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최대한 증진하고 국민들이 이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 조사, 교육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업인·농업 관련 단체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45조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8조(농촌지역 발전정책의 수립)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촌지역 발전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촌지역 발전시책을 세우는 경우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과 농업 생산여건, 농촌 생활여건 등이 불리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9조(지역 간의 소득 균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의 해소 등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정선군 공고 제2021-212호

정선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2월 18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자격 및 인원수를 변경하고 안전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도 안전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서면심의 조항을 신설하여 심의 신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직자윤리위원회 총 인원 및 위촉위원 수 변경(안 제2조)

- 총 원 : (기존) 5명 → (변경) 7명
- 위촉 위원 : (기존) 3명 → (변경) 5명
- 자 격 : (기존) 법관 → (변경) 판사·검사·변호사

나. 서면심의 규정 신설(안 제7조)

3. 의견제출

○ 해당 자치법규 일괄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0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홈페이지, 이메일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기획관)
- 전 화 : 033-560-2400
- 팩 스 : 033-560-2592
- 이 메 일 : iii@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정선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명”을 “7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3명의 위원은 법관”을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3명”을 “5명”으로 한다.

제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정선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u> 제2조(구성) ① 정선군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u>5명</u>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u>3명의</u>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2. (생략)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u>정선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u> 제2조(구성) ① ----- ----- ----- <u>7명</u>----- ----- ----- ----- --. 1. <u>5명의</u> 위원은 판사·검사·<u>변호사</u>----- ----- ----- ----- ----- ----- -----. 2. (현행과 같음) ② ----- ----- -.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u>3명</u> 중에서 선임한다. 2. (생략) ③ (생략)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 ④ (생략) <u><신설></u>	1. ----- <u>5명</u> -----.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u>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u> 2. <u>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u> 3. <u>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u>
---	---

정선군 공고 제2021-215호

정선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반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2월 24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반장 임무수행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봉사자로서 사기진작 및 행정 지원 능력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연 5만원 이하의 통신요금 지원 (안 제12조의2 제4호)

3. 의견제출

해당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6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총무행정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 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총무행정관)
- 전 화 : 033-560-2236
- 팩 스 : 033-560-2590
- 이 메 일 : yul1206@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 성	반 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반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 규정에 의한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말단 침투와 읍·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리에 반을 둔다.

제3조(구획기준) 반의 구획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지역의 반은 20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농촌지역의 반은 30가구를 기준으로 구성한다. 다만,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자연부락, 취락 형태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2. 리는 4~6개 반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반장) ①반에 반장을 둔다.

②반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위촉한다.

1. 반장은 관할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중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반의 자율적 운영능력이 있는자 중에서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위촉한다.
2.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명예반장) ①반상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반에 명예반장을 둔다.

②명예반장은 반내에 거주하는 공직자와 사회지도층 저명인수중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자 중에서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위촉하되 위촉대상자가 2인이 상일 때에는 모두 위촉하여 반상회 주재운영등을 윤번으로 담당 하도록 한다.

③명예반장은 반상회의 주재 및 진행과 반장업무수행을 지원하며 반원의 참여를 유도하

여 반상회의 자율운동을 돕는다.

제7조(임무) 반장은 읍·면장 또는 이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고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3. <삭제 1999.08.20>
4. <삭제 1999.08.20>
5.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지원
6. 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리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8조(반상회) ①반상회는 매월 1일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반상회 개최일자 및 운영은 주민 자율로 결정할 수 있다.

②읍·면장은 주민의 생명·재산등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거나 시급히 주민들에게 전파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비상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실적평가) 반간의 경쟁심을 유발하고 반장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반상회 운영 실적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반을 선정 포상한다.

제10조(건의사항 처리) ①반상회에서는 군수에게 건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반상회 건의사항은 신속하고 성실하게 처리하고, 가능한한 시책에 최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③반상회 건의사항은 다음달 반상회시 처리결과, 계획처리를 건의 반에 회보하여야 한다.

④반상회 건의신청의 처리상황은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유지) ①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편의제공) 반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읍·면의

공부의 열람, 공공시설의 사용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제12조의2(사기진작) 군수는 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또는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 현장연수 및 교육훈련
2. 향토지 구독
3. 상해보험 가입
4. 연 5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신설)
5. 기타 군수가 체육행사 등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신설)

제13조(수당 및 상여금) ①반장에게는 수당 및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수당은 연2회 지급하고 반장의 상여금은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정선군 공고 제2021-224호

정선군 체육진흥 조례안 제정 입법예고

「정선군 체육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5일

정 선 군 수

1. 제정이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군민의 체력 증진 및 건전한 여가 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 적용범위 등을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제3조)
- 나.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노인체육 진흥의 활동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6조, 7조, 8조)
- 다. 보조금 지원 단체 및 지원 범위를 규정함(안 제9조)
- 라.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및 감사 권리를 규정함(안 제11조)

3. 제정 조례안 : 별첨

4. 입법예고 : 2021. 02. 25. ~ 2021. 03. 17.(20일간)

5.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03월 17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문화관광과장)에게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청 문화관광과

- 연락처 : 전화(033-560-2083), 팩스(033-560-2593)

- 주 소 : (2316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문화예술회관 1층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체육진흥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건	비고
	찬 성	반 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체육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정선군 체육진흥 및 체육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군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5. “노인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노후 생활을 향유하는 것을 말한다.
6. “생활체육 지도자”란 지역의 생활체육 현장 지도와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위하여 정선군체육회에 배치된 지도자를 말한다.
7.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8.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체육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군민의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5조(전문체육의 진흥 지원) 군수는 우수선수의 체계적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체육관련 체육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체육회 조직의 관리·운영
2. 우수경기지도인력의 발굴 및 육성
3. 우수선수의 발굴 및 육성
4. 종합대회 및 종목경기의 개최·운영

5. 각종 대회 출전 및 참가

6. 그 밖에 전문체육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생활체육의 진흥 지원) 군수는 군민의 건강 및 체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생활체육관련 체육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생활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지원

2.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지원

3. 생활체육교실 등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

4. 생활체육대회의 개최 지원

5. 각종 생활체육대회의 출전 및 참가 지원

6. 그 밖에 생활체육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장애인체육의 진흥 지원) 군수는 장애인체육 진흥사업을 추진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체육관련 체육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장애인 체육단체와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선수와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지원

5. 각종 장애인체육대회의 출전 및 참가 지원

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노인체육의 진흥 지원) 군수는 노인체육 진흥사업을 추진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노인체육관련 체육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노인체육 동호회와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노인 선수와 노인체육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

3. 노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노인 생활체육의 개최 지원

5. 각종 노인체육대회의 출전 및 참가 지원

6.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운영 지원

7. 그 밖에 노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군 체육회 등 운영비 지원) ①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정선군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운영비 등을 보조할 수 있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기타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등

② 정선군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경비·운영비 등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사전협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등) 군수는 설립을 인가한 체육단체 등에 대하여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다.

제12조(보고·검사) 군수는 체육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서류·물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그 밖의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례 제11조(지도·감독 등), 제12조(보고·검사)는 2021. 6. 9일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령 발췌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 시책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기본 시책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① 국민의 체육 의식을 북돋우고 체육을 보급하기 위하여 매년 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을 설정한다.

② 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 및 그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감독) ①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 및 진흥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한다. <개정 2008. 2. 29., 2020. 12. 8.>

② 지방체육회는 설립을 인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독한다. <신설 2020. 12. 8.> [시행일 : 2021. 6. 9.] 제43조

제44조(보고·검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0. 12. 8.>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시행일 : 2021. 6. 9.] 제44조

□ 생활체육진흥법

제3조(국민의 생활체육 권리)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한 신체활동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생활체육을 즐길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생활체육에 관하여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활체육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 및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위하여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정선군 공고 제2021-227호

2021년 노후택시 조기 대차비용 일부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른 2021년 노후택시 조기 대차비용 일부 보조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택시운송사업자께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2월 26일

정 선 군 수

☐ 지원대상

- ① 공고일 현재 최종 소유기간이 현재 1년이상인 택시
- ② 일반택시 : 배기량(cc)관계없이 5년 이하차량
- ③ 개인택시 : 배기량(cc)관계없이 7년 이하차량
- ④ 신청기간내 교통사고 발생한 차량중 대·폐차 차량(1년내 중복수령 불가)
- ⑤ 사업량에 따라 조합에서 세부 지원대상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사업기간(신청기간) : 2021. 3. 2 ~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량 : 4대(개인택시 2대, 일반택시 2대)

☐ 신청자격 : 정선군내에 사업장주소지를 둔 개인 및 일반택시

☐ 보조금 지원기준 : 1대당 1,500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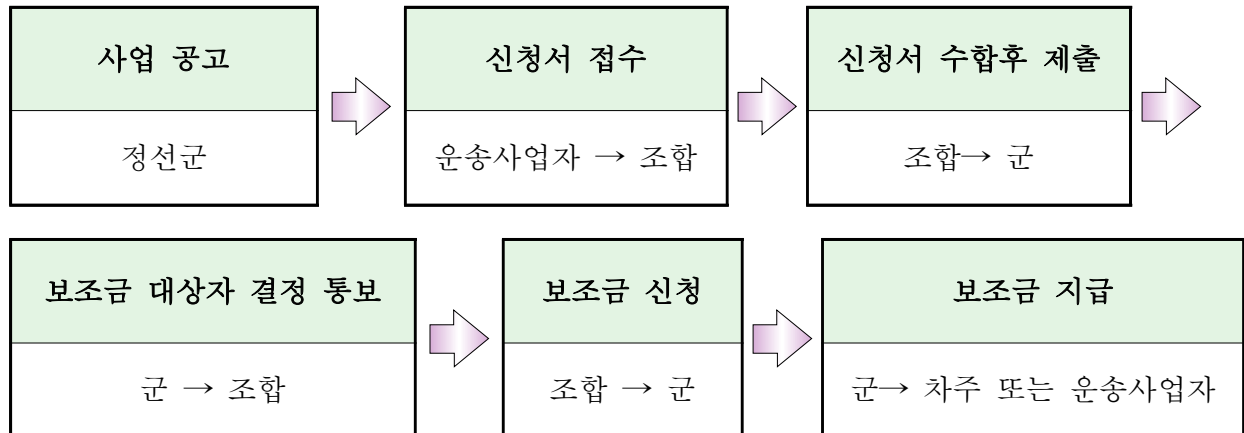
☐ 접수방법

- ① 접수기간 : 2021. 3. 2.일부터 예산소진시까지
- ② 접수장소 : 개인택시조합, 일반택시조합
- ③ 접수방법 : 직접방문

☐ 제출서류

- ① 노후택시 조기 대차비용 보조사업 신청서(붙임 1)
- ②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송사업자 면허증 사본
- ③ 차량등록증 사본 또는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 ④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별첨)

□ 지원절차



● 보조사업 신청

- 노후택시 대차비용 보조사업 신청서(붙임 1)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개인택시조합 및 일반택시조합에 신청·접수

1. 신분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면허증 사본
2. 차량등록증 사본 또는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3.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노후택시 대·폐차 후 전기차 구매자는 제외

● 보조금 지급청구

- 노후택시 대차비용 보조금 지급청구서(붙임 2)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개인택시조합 및 일반택시조합에 제출

1. 신규등록증 사본
2. 통장사본
3. 이전 또는 폐차확인 사실증명서
4. 신규등록차량 사진첨부

[붙임 1]

확인번호	노후택시 조기 대차비용 보조사업 신청서			
소유자	성 명 (회사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소 속	개인, 일반
대 상 자동차	자동차번호		차대번호	
	자동차제원	☐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배기량()CC		
	차명 및 형식	/		
위와 같이 노후택시 대차비용 보조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구 비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수 수 료
	1.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자 면허증 사본 등 2. 차량등록증 사본 또는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3.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붙임 2]

확인번호	노후 대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소유자	성 명 (회사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소 속	개인, 일반
신규등록 자동차	자동차번호		차대번호	
	자동차제원	☐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배기량()CC		
	차명 및 형식			
	보조금신청금액	원 (₩)		
위와 같이 해당내역을 신고하오니, 대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신규등록증 사본 2. 통장사본 3. 이전 또는 폐차확인 사실증명서 4. 신규등록차량 사진첨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첨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 (수집·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수행기관, 절차안내 및 사후관리업무 등
- ◆ (수집 · 이용목적) 대차 보조금 지급 증빙
-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등록번호, 생년월일
- ◆ (보유 · 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예관한법률 등
-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 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날인)

정선군수 귀중

정선군 공고 제2021-228호

「정선군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2월 26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운영이 중지된 미등록 박물관 2개소(향토박물관, 추억의박물관)에 대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공간 시설 확충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 하고자 함
- 동일건으로 기 입법예고(2021.1.7.~1.27.)기간에 의견 제시된 내용을 반영하여, 일부개정절차를 다시 진행하고자 함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입법예고기간 7일로 단축)

2. 주요내용

- 박물관의 명칭 및 위치 정비(안 제4조)
 - 제4조 1호 및 제3호 삭제
- 유물 평가위원회 구성 규정(안 제8조)
 - 제8조 제1항 개정 및 제8조 4항, 5항, 6항, 7항 신설
-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별표1」 개정
 - 별표 1 박물관 관람료(향토박물관, 추억의박물관 삭제)
-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별표2」 개정
 - 별표 2 박물관 시설물 대관료(추억의 박물관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21년 3월 5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정선군수(참조 : 문화관광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17 정선군청 문화관광과 (우편번호 26131)

○ 연락처 : 전화(033-560-2138), 팩스(033-560-2593), 이메일(audgml8154@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정선군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정선군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선군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

제4조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2명 이상의 전문 감정원의 감정을 거쳐 구입해야 한다.”를 “분야별 유물평가위원의 감정을 거쳐 구입해야 한다.”로 한다.

제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며 해당 분야 평가 종료 시 자동 해산한다.

1. 박물관 학예연구관 및 학예연구사
2. 문화재청 또는 시·도 소속 전직·현직 문화재 위원·전문위원
3. 구입대상 유물, 기증·기탁신청 유물 해당분야 박사학위 이상 소지한 사람
4. 민속학 또는 역사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감정평가 능력이 있는 사람
5. 유물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구입대상 유물의 선정
2. 구입대상 유물의 진위여부와 역사적·문화적 가치 및 가액 평가
3. 그 밖에 유물수집에 관한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

제8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유물평가위원은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8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평가위원회 회의에 참여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별표 1의 향토박물관과 추억의 박물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2의 추억의 박물관을 삭제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설립 및 명칭·위치) 정선군 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조에 따라 정선군 공립 박물관·미술관(이 조례에서 “박물관”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이 경우 그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박물관: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화암동굴길 12-2 2. (생략) 3. 추억의박물관: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함백로 565	제4조(설립 및 명칭·위치) ----- ----- ----- -----. <삭 제> 2. (현행과 같음) <삭 제>
제8조(자료수집) ① 군수는 전시·연구 및 교육(이 조에서 “전시 등”이라 한다)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료를 구입할 경우에는 해당 <u>전문자격증을 소지한 2명 이상의 전문 감정의원의 감정을 거쳐 구입해야 한다.</u> ② 군수는 법제8조에 따라 전시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기부 등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무상기부 등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기부 등을 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는 그 기부 등 확인서와 평가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례를 할 수 있다.	제8조(자료수집) ① ----- ----- ----- -----<u>분야별 유물평가위원의</u> <u>감정을 거쳐 구입해야 한다.</u> ② ----- ----- ----- ----- ----- -----.

③ 군수는 전시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 전환 등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③ -----

-----.

④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며 해당 분야 평가 종료 시 자동 해산한다.

1. 박물관 학예연구관 및 학예연구사
2. 문화재청 또는 시·도 소속 전직·현직 문화재 위원·전문위원
3. 구입대상 유물, 기증·기탁신청 유물 해당분야 박사학위 이상 소지한 사람
4. 민속학 또는 역사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감정평가 능력이 있는 사람
5. 유물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구입대상 유물의 선정
2. 구입대상 유물의 진위여부와 역사적·문화적 가치 및 가액 평가
3. 그 밖에 유물수집에 관한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

⑥ 유물평가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⑦ 평가위원회 회의에 참여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관계법령 발췌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제12조(설립과 운영)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관리·보존·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별표 1]

(변경전)

박물관 관람료(제10조제1항 관련)

구분	관람료	비고
향토박물관	무료	
아리랑박물관	2,000원 이상 정선아리랑상품권	
추억의박물관	2,000원 이상 정선아리랑상품권	

[별표 1]

(변경후)

박물관 관람료(제10조제1항 관련)

구분	관람료	비고
아리랑박물관	2,000원 이상 정선아리랑상품권	

[별표 2]
(변경전)

박물관 시설물 대관료(제21조제1항 관련)

구분	면적	사용기준	대관료	비 고
아리랑 박물관	76.51m ²	1일	35,000원	○ 기준일 1일 미만시간은 사용기준으로 본다.
추억의 박물관	68.80m ²	1일	30,000원	○ 기준일 1일 미만시간은 사용기준으로 본다.

[별표 2]
(변경후)

박물관 시설물 대관료(제21조제1항 관련)

구분	면적	사용기준	대관료	비 고
아리랑 박물관	76.51m ²	1일	35,000원	○ 기준일 1일 미만시간은 사용기준으로 본다.

정선군 공고 제2021-247호

정선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지역정보화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3월 3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종합(기본)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므로, 자체 기본계획 수립 삭제하고
- 나. 정선군 지역정보화위원회 기능 및 역할이 유명무실하여 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명을 「정선군 지역정보화 조례」 → 「정선군 정보화 조례」로 개정
- 나. 상위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안 제1조)
- 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삭제 (안 제4조)
- 라. 지역정보화 시행계획 개정 (안 제5조)
- 마. 지역정보화위원회 및 기능 삭제(안 제6조, 제7조)

3. 제정 조례안 : 별첨

4. 입법예고 : 2021. 3. 3.~ 2021. 3. 23.

5.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총무행정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의견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 소 :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총무행정관실
- ▶ 전 화 : 033-560-2462
- ▶ 팩 스 : 033-560-2903
- ▶ E-mail : ays25@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조례 제 호

정선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선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선군 지역정보화 조례」 명칭을 「정선군 정보화 조례」로 개정 한다.

제1조 중 “ 「국가정보화 기본법」 ” 을 “ 「지능정보화 기본법」 ” 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지역정보화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강원도 정보화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정선군 지역정보화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조례명칭 「정선군 지역정보화 조례」	조례명칭 「정선군 정보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 -----.
제4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선군 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제6조에 따른 정선군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삭제>

현행	개정안
8. 정보격차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군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요청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부문계획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정선군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정선군 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행계획을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정보화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강원도 정보화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정선군 지역정보화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

현행	개정안
제6조(정보화위원회) ① 지역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정선군 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정선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정보화 업무담당 과장 3. 지역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u><삭제></u>

현행	개정안
⑤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회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점검 3. 그 밖에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제>

관련 법령 발췌

□ 국가정보화 기본법<개정전>

제6조(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 ① 정부는 국가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립·확정한다.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정보화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과학기술, 재난안전 등 공공 분야의 정보화
 3. 제16조에 따른 지역정보화
 4. 산업·금융 등 민간 분야 정보화의 지원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분야별 정보보호, 국가정보화 기반의 조성 및 고도화
 6. 정보문화의 창달 및 정보격차의 해소
 7. 개인정보 보호, 건전한 정보통신윤리 확립,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8. 정보의 공동활용 및 표준화
 9.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법령·제도의 개선
 10.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활성화
 11.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2. 그 밖에 국가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의 작성지침을 정하고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 ⑤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할 때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기본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 실적을 점검·분석하여 그 결과를 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 실적과 시행계획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분석한 후 그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사항을 점검·분석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시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 ⑥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지역정보화의 추진)

-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지역·도시에 대하여 행정·생활·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보화(이하 “지역정보화”라 한다)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③ 국가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행정, 재정, 기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지능정보화 기본법<전부개정>

제6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 ①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종합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립·확정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공공·민간·지역 등 분야별 지능정보화
3. 지능정보기술의 고도화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촉진과 관련 과학기술 발전 지원
4. 전 산업의 지능정보화 추진, 지능정보기술 관련 산업의 육성, 규제개선 및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등을 통한 신산업·신서비스 창업생태계 조성
5. 정보의 공동활용·표준화 및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
6. 지능정보사회 관련 법·제도 개선
7.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홍보·인력양성 및 국제협력
8.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9. 정보보호, 정보격차 해소, 제51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 역기능 해소,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10.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운용 및 인력확보 방안
11. 그 밖에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할 때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종합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 실적을 점검·분석하여 그 결과를 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다음 해의 실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동으로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 실적 및 실행계획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실행계획을 점검·분석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점검·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그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실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의견을 참

작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기관등이 추진하는 지능정보화 사업의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은 제외한다.

⑦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